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 28.(수) 9:00,
(지면) 2026. 1. 28.(수) 조간

배포 2025. 1. 27.(화) 오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해양사고 심판 변론 지원

- 2026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122명 선정하여 발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은 1월 26일(월) 2026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122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판과정에서 타인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 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2011년도 도입되었다.

동 제도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해양사고 관련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 (직권선정) 해양사고 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 선정) 해양사고 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작년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데, 심판변론인의 등록자격은 다음과 같다.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치거나 해사관련 법학박사 학위 취득한 교수, 심판관 및 조사관, 선박관련 공무원, 변호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은 변호사(67명), 해기사(11명), 전·현직 조사관·심판관(38명), 관련학과 교수 등(6명)으로 구성되었다.

※ 2026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구분	변호사	해기사		전·현직 공무원			교수 등	합계
		항해사	기관사	조사관	심판관	선박관련		
인원수 (명, 비율)	67 (55%)	11 (9%)	0 (0%)	7 (6%)	25 (20%)	6 (5%)	6 (5%)	122 (100%)

이시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으로 해양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대상자 명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책임자	심판관	김기남 (044-200-6207)
		담당자	주무관	노혜선 (044-200-6209)

- (목적)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심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 제고
- (선정 기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검토하여 운영
 - (직권 선정) ① 미성년자인 경우, ② 70세 이상인 경우, ③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④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 (청구에 의한 선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②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④ 그 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권리보호 필요에 의한 선정)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②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